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98
----------	------

발의연월일 : 2017. 3. 20.

발의자 : 노웅래 · 김영호 · 김병관
안민석 · 홍문표 · 이개호
조배숙 · 이재정 · 박주민
이동섭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

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 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6조 제1항).
- 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2항 및”을 “제2항·제3항 및”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로,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5조제8호 중 “제2항제1호의”를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5조제2항제2호의”를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7조(영업의 제한) -----
1.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 -----제2항·제3항 및 -----
2. · 3. (생 약)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약)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약)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6. (생약)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

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4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제40조(청문) -----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제45조(별 칙) -----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8. -----제2항제1 호 및 제3항제1호의----- ----- ----- -----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 여 영업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